

#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우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 전화 (02) 771-0614 / 전송 771-0868

문서번호 사업 67511 - 528

시행일자 '95. 3. 29

(경유) (제1안)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취급		본 부 장
보존		
청소국장	전결	<i>[Handwritten Signature]</i> 1
사업부장	<i>[Handwritten Signature]</i>	법무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작업2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	주 중 문 <i>[Handwritten Signature]</i>	협조

제 목 서울특별시 조폐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폐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 별첨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폐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및 입법예고 공고문안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95. 4. <sup>6</sup> *[Stamp]* '95. 4. <sup>25</sup> *[Stamp]*

다. 게재 공보 : 서울시보

원본대수필

- 첨 부 : 1.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폐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폐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제2안)

수 신 공보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Stamp]*

제 목 서울특별시 조폐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안 공고의뢰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폐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Handwritten Signature]*

092

66

"(제1안) 가, 나, 다호 이기시행 "

첨 부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

093

2-2

67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sup>97</sup>호

심사	1995.4.26	제 14호
담당자	김민재	김우담
	14	15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4월 <sup>6</sup>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동법시행규칙·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 재질등에관한규칙 및 제품포장에대한과태료부과지침(환경부 폐정 67501-144 '95.2.6)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대상 추가

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류·잡화류·종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1차위반 : <sup>200</sup>150만원, 2차위반 : <sup>250</sup>20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나.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의 미이행

- 1차위반 : <sup>200</sup>150만원, 2차위반 : <sup>250</sup>20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다.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2만대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완충재 감량화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제출 미이행

- 1차위반 : ~~150~~<sup>200</sup>만원, 2차위반 : ~~200~~<sup>250</sup>만원, 3차위반 : 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4월<sup>25</sup>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사업본부 사업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771 - 0614~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095

6P